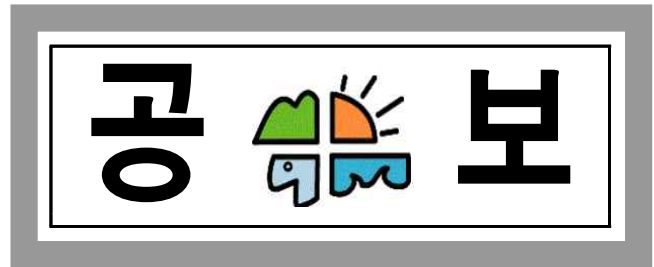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70호 2023년 5월 30일(화)

입법예고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2. 7. 28.)으로 2023년 우리 시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다. 센터 설치 및 운영,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마. 운영 및 위탁,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바. 지도 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6.(금)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보건위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1)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

2) 연 락 처 : 전화(033-639-2914), 팩스(033-632-1814)

3) 전자문서 : lss777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033-639-2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
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이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